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량주권 실현 및 실경작자 기반의 농지 정책 원칙 규정〉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0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3. 9.
3. 회 부 일 :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율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실경작자 소유 전환, 농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 공공농지 확대 및 실경작자 우선 임대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은 이러한 헌법상 원칙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농지는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 국토 환경 보전 및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 하에 보전·관리되어야 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시행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기본 이념 (제3조)	농지의 성격	-식량공급, 국토환경 보전,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 로운 발전을 위한 자원	-식량공급(미래세대 포함), 환 경 보전,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자원
		보전·관리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관리 행사의 제한 및 의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확보· 보존·이용·보전~~
		소유·이용	~~-농업생산성 향상 -투기 금지~~	~~-식량주권 실현 -투기 금지~~
2	국가 등 의무 (제4조)		-기본이념 구현 -농지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 <추가> <추가> <추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실경 작자 소유 전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의 효율적 이용 증진 -공공농지 확대 및 청년농·귀 농인 등 실경작자 우선 임대

이에 비해 개정안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농지를 확보·보전하고 소유·이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식량안보 확보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 공공농지 확대 및 청년농업인·귀농인 등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식량주권’을 중심으로 농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정책 추진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기본 이념에서 식량주권 실현을 명시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식량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량 생산의 기반으로서 농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재로서 국제정세 등 외부 변수의 영향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자급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24년 47.9%로, 2019년을 기점으로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간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

연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15년	53.5	101.0	23.0	1.2	4.1	32.1	103.3	13.6
2016년	54.1	104.7	24.6	1.8	3.7	24.6	103.6	13.4
2017년	51.9	103.4	26.0	1.7	3.3	22.0	104.1	10.5
2018년	50.3	97.3	32.1	1.2	3.3	25.3	104.1	9.6
2019년	49.3	92.1	47.7	0.7	3.5	26.7	104.3	10.8
2020년	49.3	92.9	38.2	0.8	3.6	30.4	104.5	14.2
2021년	44.1	84.6	33.3	1.1	4.1	23.7	104.0	11.8
2022년	49.4	104.8	29.8	1.3	4.3	28.6	103.1	10.5
2023년	49.3	99.1	25.6	2.0	4.5	35.7	102.5	12.7
2024년	47.9	96.0	22.0	1.5	4.3	37.4	102.8	1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26.1.)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량안보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 면적은 최근 10년간(2016~2025)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 164.4만 ha에서 2025년 150만ha로, 약 8.8%(△14만 4,000ha) 감소하였음.

[연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ha, %)

구 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경지면적	1,644	1,621	1,596	1,581	1,565	1,547	1,528	1,512	1,505	1,500
논	896	865	844	830	824	780	776	764	761	756
밭	748	756	751	751	741	766	753	748	744	744
증감률	-2.1	-1.4	-1.6	-0.9	-1.0	-1.2	-1.2	-1.1	-0.5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이처럼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농지의 보전 및 관리의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식량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속과 이농(8년의 자경 기간)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고령 농업인 보유 농지(농업경영기간 5년 이상) 등은 일정 요건 하에 임대가 가능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 농지, 개인이 3년 이

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한 위탁 임대에 한하여 임대차가 허용됨.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이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지의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임대차 관련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차 농지	전체농지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1,565	1,547	1,528	1,512
	임차농지	844	855	822	833	717	746	762	738	717	712
	(비율)	(49.9)	(50.9)	(50.0)	(51.4)	(44.9)	(47.2)	(48.7)	(47.7)	(46.9)	(47.1)
임차 농가	전체농가	1,121	1,089	1,068	1,042	1,021	1,007	1,036	1,031	1,022	999
	임차농가	665	649	615	588	513	518	535	526	511	445
	(구성비)	(59.3)	(59.6)	(57.6)	(56.4)	(50.2)	(51.4)	(51.6)	(51.0)	(50.0)	(44.5)
	자작+	575	555	526	504	426	434	446	439	429	379
	임차	(51.3)	(51.0)	(49.3)	(48.4)	(41.7)	(43.1)	(43.0)	(42.6)	(42.0)	(37.9)
	순임차	90	94	89	83	87	88	89	87	82	66
	(8.0)	(8.6)	(8.3)	(8.0)	(8.5)	(8.4)	(8.6)	(8.5)	(8.0)	(6.6)	
자작농가	453	439	452	451	500	484	496	500	503	551	
(40.4)	(40.2)	(42.3)	(43.3)	(49.0)	(48.1)	(47.9)	(48.5)	(49.2)	(55.2)		
경유농가	3	1	1	2	8	5	5	5	8	3	
(0.3)	(0.1)	(0.1)	(0.2)	(0.8)	(0.5)	(0.5)	(0.5)	(0.8)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더욱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53.2%, 60세 이상이 약 88%를 소유하는 등 농지 소유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¹⁾ 향후 상속 등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이만희의원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4.7.3.

셋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농지의 지속적 확대 및 청년농·귀농인 등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의 사적 소유가 가능한 현행 농지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자발적 거래를 통하여 공공농지를 확대함으로써 농지의 본유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농지 보전에 역행하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만약, 이러한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이에 수반하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농지의 매각 없이 공공비축이 지속되는 형태로 추진될 경우에는 그 전속성으로 인해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차별적으로 가중된 규제를 받는 농지의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탈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농지의 임대에 일부 정책적 고려를 가미하여 공개입찰과 같은 시장경쟁을 도입할 경우 농업생산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농지임대료 책정과 농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공공농지의 확대는 그 실현가능성과 별론으로 농지의 사적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농지의 잠재적 전용가능성에 따른 지가의 상승, 농지 전용 압력의 증대,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괴리 등 현재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특히,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업생산기반의 유지 목적과 더불어 사실상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인 농지의 사적 소유와 이를 활용한 생산활동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과정의 왜곡이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농지활용)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농지의 사적 소유를 공공 소유로 대체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구현하는 정책 방안의 모색은 현행 농지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농지의 기본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1996년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라는 국제 농민 운동 단체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 중심의 농업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짐.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식량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양적·물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식량주권’은 민족, 지역, 또는 공동체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됨.²⁾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법률 내에서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다수 있으나,³⁾ ‘식량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정안에서도 식량주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개념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개념이 농지의 보전·관리나 정책 수단의 근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상 농지의 보전관리 원칙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행사의 제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전·소유·이용되도록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전관리 원칙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행사의 제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2) 「농민권리, 식량주권 그리고 농민헌법」(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상희, 2021)

3)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4조제3항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 이념은 농지의 소유권도 사유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일반 원칙⁴⁾을 농지에 관하여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됨.

실제로 농지법은 이러한 기본 이념을 근거로, 농지의 소유자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로 제한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을 강제하며, 농지의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사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규제를 두고 있음.

즉, 현행 농지법 체계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행사의 제한 및 의무 부과는 농지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에 따르면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실

4)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경작자 중심의 소유 구조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지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임대차를 통해 농업을 지속함에 따라 사실상 자작농 체제는 약화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 소유를 실경작자로 제한할 경우, 농지 거래가 위축됨으로써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고령농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 정책은 소유 중심의 규제보다는 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⁵⁾

참고로, 우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 시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은 정책적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이만희의원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4.7.3.

넷째, 공공농지의 지속적 확대 및 청년농·귀농인 등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 정책을 수립할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구조의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토지, 특히 농지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년 동안 이어진 논쟁적 사안⁶⁾으로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직접적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정책적 함의가 클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공농지 확대정책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자원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임.

때문에 정부의 현행 농지지원 사업도 농지의 매입·축적을 통한 공공농지의 확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고령농의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고 실경작자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매매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농지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진입농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지의 공공소유 확대 자체가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도 농지매매사업의 목적을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 억제에 두고 있음.⁷⁾

6) 신수미, 농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한편,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 정책 수립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시험·연구·실습 목적 및 주말·체험영농 제외)을 고려하면 별도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개정안은 식량 공급의 기반으로 농지 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 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식량주권 개념의 불명확성, 현행법상 재산권 제한 규정과의 관계, 농지 소유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농지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